

소 송 인 수 참 가 신 청 서

사 건 2000가합00 청구이의

원 고 ○○○

피 고 ◇◇◇

피인수신청인 ◆◆◆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인수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하게 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신 청 취 지

피인수신청인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 중 금 10,000,000원 청구 부분을 인수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- 1.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 이 사건 청구이의의 대상인 물품대금(판결금) 채권 중 10,000,000원을 피인수신청인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.
- 2. 그렇다면 피인수신청인은 소송목적인 의무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는 피인수신청인에게 이 사건 소송 중 위 승계부분을 인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

1. 소송인수참가신청서 부본 2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제출법원	소송계속법원	관련법규	민사소송법 제82조	www.klac.o
제출부수	신청서 1부, 피인수신청인 및 상대방 당사자수 만큼의 부본 제출			
불복절차	·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통상항고(민사소송법 제439조) · 인수결정은 중간적 재판이므로 불복할 수 없음			
기 타	피인수참가인은 인수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인수참가인이 됨	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당사자 >> 소송참가